

1. 사채의 번호
2. 발행년월일
3.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
 ③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### 상    법

제470조(총액의 제한) 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

### 지방공무원법

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,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지방공무원임용령

제27조의2(파견근무)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1.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, 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
### 3. 大邱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

#### 1. 審查過程

- 제출일자 : 1993년 6월 11일
- 제출자 : 대구직할시장
- 회부일자 : 1993년 6월 12일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6. 참고자료

### ○ 관계법령 발췌

#### 지방자치법

제137조(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## 지방공기업법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사장·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사장·부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, 제53조 제1항, 제56조 내지 제66조의 2, 제68조 내지 제74조,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 “부사장”은 “부이사장”으로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

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·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